



사례로 보는 민법 개정안



김문중
연속교육팀, 변호사

I 사례

올해 대학교 새내기인 주리엣(1994. 6. 30.생)양은 남자친구인 노미오 군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단둘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물론 부모님께는 동성친구들과 배낭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공항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 티켓을 들고 다정한 포즈로 셀카를 찍었다. 마침 그들 옆으로 인기스타 우연히 씨가 화보 촬영차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고, 이 모습을 한 언론사가 '공항패션'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하였다. 주리엣 양은 자신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러 가지로 난감하다고 한 친구에게 말했고, 그 친구는 부모의 대리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부모님 몰래 다녀온 여행이라 부모님의 대리는 곤란한 주리엣 양, 과연 부모님의 대리인만 조정신청이 가능할까?

II 판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은 성년에 이르는 나이를 기존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추었다.(제4조)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미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그 기준을 19세로 보고 있었다. 이제 민법의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계약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대학 새내기나 재수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면, 언론조정절차에도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인정에 관한 기준들이 적용되므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대리에 의해서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리엣 양은 개정 민법에 의하면 성년이므로 부모의 대리 없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II 사례

작년 여름, 성격 차이로 이혼한 이몽룡 씨와 성춘향 씨.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던 그들 부부는 이몽룡 씨가 친권을 갖기로 합의했고, 이몽룡 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였다. 성춘향 씨는 이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고, 그 곳에서 재혼한 상태이다. 그러던 중 올 7월, 이몽룡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몽룡 씨의 어머니는 문상을 온 옆집 고시생으로부터 이러한 경우 성춘향 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를 책임지고 싶어 했던 이몽룡 씨의 어머니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성춘향 씨가 친권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고시생의 말처럼 성춘향 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될까?

II 판례

친권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이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의 경우라면 부모가 갖게 되고(민법 제909조 제1항)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부모의 합의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동조 제4항) 문제는 사례와 같이 단독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자(이몽룡)가 사망한 경우이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경우 부모의 다른 일방(성춘향)이 친권자로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고 최진실 씨의 사례가 대두되면서 친권의 자동 부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즉, 친권을 다른 부모의 일방이 자동적으로 갖는 경우 유산이나 다른 부모 일방의 상황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 민법은 당연히 다른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다른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동법 제909조의2 제1항),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춘향 씨가 당연히 친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몽룡 씨의 어머니가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